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2
----------	-----

제출년월일: 2023. 10. .

제 출 자: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가. 농촌고령화, 인주소멸에 따른 농업인력 지원사업과 고령 농업인 건강검진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농업·농촌 진흥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 나. 상위법령에 따라 설치된 평창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여 농정분야 보조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용하는 용어의 뜻 신설(안 제2조 제5호~제6호)
- 나. 민·관협치 농정확대 조항 신설(안 제3조 제2항)
- 다. 군에서 지원(예정)하는 사업의 근거 규정 정비 및 마련
- 사업의 근거 규정 정비(안 제6조 4호, 12호)
 - 농업인 및 농촌인력에 관한 사항 등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각호의 규정 신설(안 제6조 25호~26호)
- 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규정에 따른 정책심의회 조항 신설(안 제7조)

마. 농업·농촌 진흥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신청 조항
신설(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정책심의회)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 08. 14. ~ 2023. 09. 0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일부 반영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품목별농업인연구회”란 동일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 경제적 이익실현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평창군농업기술센터에 등록한 모임을 말한다.
6. “농업인력”이란 농업에 사용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국내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군은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대의기구인 평창군 농어업회의소와의 협치를 통해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제4호 중 “수출”을 “국내외”로, “화훼”를 “화훼, 특용작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2세”를 “가업승계”로 하며, 같은 조 제25호를 제2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5호 및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농촌고령화 및 인구소멸에 따른 농업인력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

의 제공사업

26. 농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업
제7조,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7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정책심의회) ① 군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평창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라 신청한 지원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창군 농어업회의소의 회장이 정책심의회에 부의를 요청한 사항

③ 정책심의회는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15조의 규정을 따르되, 위촉직 위원인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품목별농업인연구회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5. ~ 10. (생략)</p> <p>제3조(군의 책무)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품목별농업인연구회”란 동일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 경제적 이익실현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등록한 모임을 말한다.</u></p> <p>6. <u>“농업인력”이란 농업에 사용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국내외 사람을 말한다.</u></p> <p>7. ~ 12. (현행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p> <p>제3조(군의 책무) ① (현행 제목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군은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대의기구인 평창군 농어업회의소와의 협치를 통해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u></p>
<p>제6조(농업·농촌 진흥 및 농업</p>	<p>제6조(농업·농촌 진흥 및 농업</p>

경쟁력 강화) 군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농촌지역개발, 자립기반 확충, 농업인의 복지증진, 도농교류 촉진 등을 위하여 각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 과수, 화훼 등 유망품목 육성사업
5. ~ 11. (생략)
12. 2세 농업인의 전업농 육성사업
13. ~ 24. (생략)

<신설>

<신설>

25. (생략)

<신설>

경쟁력 강화) -----

1. ~ 3. (현행과 같음)
4. 국내외 -----
-- 화훼, 특용작물 -----
--
5. ~ 11. (현행과 같음)
12. 가업승계 -----
--
13. ~ 24. (현행과 같음)

25. 농촌고령화 및 인구소멸에 따른 농업인력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의 제공사업

26. 농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업

27. (현행 제25호와 같음)

제7조(정책심의회) ① 군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

조에 따라 평창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라 신청한 지원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창군 농어업회의소의 회장이 정책심의회에 부의를 요청한 사항

③ 정책심의회는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15조의 규정을 따르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9조(지원신청)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품목별농업인

제7조 (생략)

<신설>

제8조 · 제9조 (생략)

연구회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 제11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관계법령 발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정책심의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 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제6조 제25호
 - 농촌 고령화 및 인구소멸에 따른 농업인력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의 제공사업
- 나.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제6조 제26호
 - 농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업

2.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농업인력(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예상인원

(단위: 명)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예상)	2025년(예상)	2026년(예상)
합계	251명	625명	650명	650명	650명
MOU 도입	213	536	550	550	550
결혼이민자	38	89	100	100	100

- 고령농업인(65세이상) 현황

(단위: 명)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전체인원	5,374	5,787	6,160	6,490	6,743
홀수년도	2,754	2,754	3,127	3,127	3,380
짝수년도	2,620	3,033	3,033	3,363	3,363

- 나. 추계 결과

- 농업인력 지원내역: 4개사업 623,873천원
 - 외국인계절근로자 숙소지원사업: 10,000천원 × 30개소 = 300,000천원(도비지원)
 - 외국인계절근로자 통역 등 인건비: 31,520천원 × 기간제근로자 3명 = 94,561천원
 - 외국인계절근로자 사무관리비(수송 및 교육 등): 54,900천원 × 1식(650명) = 54,900천원
 - 외국인계절근로자 보험료 지원(산재, 의료): 147,000천원 × 1식(650명)

= 147,000천원(도비지원)

- 특수건강검진비 지원예상: 5년간 2,211,600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사업량(명)	2,620	2,720	2,995	3,088	3,321
사업비(천원)	393,000	408,000	449,250	463,200	498,150

※ 1인당 300,000원의 50% 지원(농축협 40%, 자부담 10%)

※ 평창군 자연감소(사망 등)율 적용: 1.23%(530/42,900명, 2022년 기준)

다. 재원조달 방안

- 외국인계절근로자 숙소지원사업: 군비 70%, 도비 보조금 30%
- 외국인계절근로자 통역 등 인건비: 전액 군비
- 외국인계절근로자 사무관리비: 전액 군비
- 외국인계절근로자 보험료 지원(산재, 의료): 군비 70%, 도비 보조금 30%
- 고령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지원: 전액 군비, 농협협력사업으로 추진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 이용하
연락처	(033) 330 - 1302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989,461	1,005,407	1,047,612	1,062,527	1,098,451	5,203,458	
외국인계절근로자 숙소지원사업 (402-01)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외국인계절근로자 통역 등 인건비 (101-04)	94,561	95,507	96,462	97,427	98,401	482,358	
외국인계절근로자 사무관리비(수송,교육) (201-01)	54,900	54,900	54,900	54,900	54,900	274,500	
외국인계절근로자 보험료 지원(산재, 의료) (307-06)	147,000	147,000	147,000	147,000	147,000	735,000	
고령농업인 특수건강 검진비 지원 (301-02)	393,000	408,000	449,250	463,200	498,150	2,211,600	
재원 조달	989,461	1,005,407	1,047,612	1,062,527	1,098,451	5,203,458	
의존 재원	소 계	54,000	54,000	54,000	54,000	54,000	270,000
	보조금(도비)	54,000	54,000	54,000	54,000	54,000	270,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935,461	951,407	993,612	1,008,527	1,044,451	4,933,458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비(군비)	935,461	951,407	993,612	1,008,527	1,044,451	4,933,458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